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위험시기의 기간과 위험지역의 범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외 유입 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을 추가(안 제2조제2항)하고 야생 동물(토끼목, 식육목*, 박쥐목)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안 [별표 8])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1) 국무조정실이 수입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20.6.3.)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 추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할 필요

2) 토끼질병(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을 제3종 가축전염병에 추가하고, 야생동물(토끼목, 식육목, 박쥐목)의 검역기간을 신설(안 [별표 8])

- 수출/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일/15일, 식육목 1일/10일, 박쥐목 1일/180일

나.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범위 설정(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

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 이동제한 명령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위험시기의 기간 및 위험지역의 범위를 설정

-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 가능)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은 철새 군집지역과 그 인근 3km 범위내의 지역으로 정함

다.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추가(안 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필요

라.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뉴캐슬병 추가(안 제23조제1항)

뉴캐슬병은 그간 국내 상재 질병으로 의무적 예방접종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 감염된 가축 살처분은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비발생 및 청정 상황 유지를 위해, 향후 발생 시에는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추가하여 살처분 명령 도입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F)낭(囊)병”을 “(F)낭(囊)병·토끼출혈병·토끼점액증·야토병”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 유입되는 철새의 개체수, 분포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란 철새도래지와 그 철새도래지 인근 3km 범위내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3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은 음식물

제23조제1항제1호 중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

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뉴캐슬병”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범위 및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이를”을 “범위, 기준 및 확인 방법은 검역본부장이”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것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각 수출국의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수출국의 작업장 등 검역시설의 등록·관리 절차 등 공통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 중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토끼목(제14호 및 제15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15일
11. 식육목(제1호, 제14호 및 제15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10일
12. 박쥐목(제14호 및 제15호의 동물)	1일	180일

은 제외한다)		
---------	--	--

별표 14의2 제3호제3호의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p>1) 야생조수류를 안전하게 사육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바닥은 견고한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다만, 동물의 특성상 적합한 시설일 경우는 제외)로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야수류 동물의 수입상자 우리 등이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p> <p>2)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3) 야생조수류의 특성에 따라 온도, 습도 및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p> |
|--|

별표 14의2 제6호제1호1) 중 “디지털카메라”를 “사진촬영기기”로 한다.

별표 18 그 밖의 가축의 광견병의 검사방법란 “효소면역중화실험”을 “효소면역법”으로 하고, 같은 표 그 밖의 가축의 광견병의 형광항체중화시험의 수수료란 “55,000원”을 “1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소유자·관리자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내용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육계[], 종계[], 산란계[], 토종닭[], 육용오리[], 종오리[], 혼합[]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입식 규모
	입식 일령(日齡)		입식 예정일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m ²	사육 형태 축사[], 방목[], 축사 및 방목 혼합[]	
	가축의 출하 예정일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독설비[], 방역시설[], 정상 작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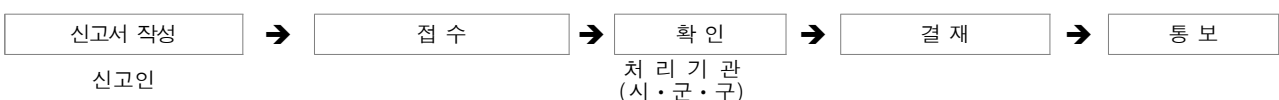
붙임 서류	1. 신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2. 가축 공급계약서 사본 1부 3. 축산계열화사업자 위탁사육 계약서 사본 1부 4. 입식 농장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점검표 1부(뒷면) 5. 기타 입식사전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입식 농장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점검표

구 분		설치여부		설치 대수	정상작동	
		여	부		여	부
소 독 시 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 소독 장치	☐	☐		☐	☐
	(2)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 닭·오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신발소독조	☐	☐		☐	☐
	- 사료창고·집란실에 신발소독조	☐	☐		☐	☐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3) 농장의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		☐	☐
	(4) 방문자 출입기록부	☐	☐		☐	☐
	(5)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	☐		☐	☐
방 역 시 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	☐	☐		☐	☐
	(2)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	☐		☐	☐
	(3) 울타리 또는 담장	☐	☐		☐	☐
	※ 울타리 또는 담장이 전부 또는 일부없는 부분의 자연경계 유무	☐	☐		☐	☐
	(4) 방역실	☐	☐		☐	☐
	(5) 물품반입창고	☐	☐		☐	☐
	(6) 전실(前室)	☐	☐		☐	☐
	(7)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의 차단망	☐	☐		☐	☐
	(8)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생략)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炎)·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F)낭(囊)병·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② (생략) <u><신 설></u>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u> ”이란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다만,

<신 설>

③ · ④ (생 략)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 유입되는 철새의 개체수, 분포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란 철새도래지와 그 철새도래지 인근 3km 범위 내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

-----.

1. ~ 7. (현행과 같음)

8. 남은 음식물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

-----.

1. 제1종가축전염병 : <u>우역 · 우폐역 · 구제역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열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u> 2. 3. (생 략) ② ~ ⑦ (생 략) 제31조(지정검역물) ① (생 략) ② 제1항제9호 · 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 · 살균 · 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 ----- <u>우역 · 우폐역 · 구제역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열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뉴캐슬병</u> 2.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정검역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기준 및 확인 방법은 검역본부장이 -----.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되어 실온에서 보관 · 유통이 가능하도록
---	---

②・③ (생 략) <u><신 설></u>	<u>밀봉처리한 것</u>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각 수출국의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수출국의 작업장 등 검역시설의 등록・관리 절차 등 공통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	---